

전기차 충전구역

불법 행위 단속 안내

시행시기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

단속대상



불법주차



충전방해



전용구역 표시 및 기기 훼손

부과기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 2 및 제16조

- 일반 차량이 주차한 경우(전기차 및 PHEV만 충전하는 목적으로 주차 가능)
- 구역 내 또는 주변,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

- 급속 충전시설에 친환경 차량이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
- 완속 충전시설에 친환경 차량이 14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
- 친환경 차량: 전기차 및 PHEV 차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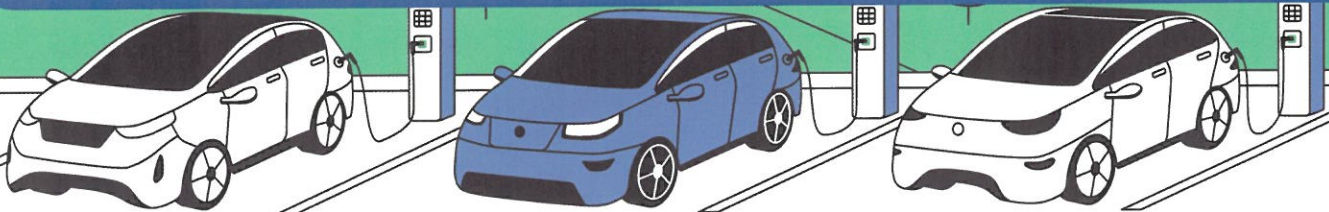


과태료
10만원

- 충전구역 표시 및 충전시설을 훼손한 경우



과태료
20만원



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위반, 충전방해, 훼손은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.



22년 1월 28일부터 시행

과태료
10만원



전기차 충전구역 내
일반차량을 주차하는 행위

과태료
10만원

60:00



급속충전을 시작하고 1시간이 지난 후에도
계속 주차하는 행위(완속충전의 경우 14시간)

과태료
10만원



충전시설 주변에
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

과태료
10만원



충전구역 내 물건 적치 및 앞뒤 양측면에
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

과태료
20만원



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

과태료
20만원



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훼손하는 행위